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49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이용선 · 오기형 · 강준현
최민희 · 김남근 · 김성범
정일영 · 이재강 · 염태영
신장식 · 오세희 · 윤종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장”을 “제2장 및 제3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

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u> ① <u>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u>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 ·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u>
	2. <u>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u>

<신 설>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
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
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
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
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
되는 비용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
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
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
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
(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

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
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
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
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
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
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
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
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
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
다.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
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

<삭 제>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
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
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
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
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
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
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
다.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
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